



# 재래식 계량단위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 장뇌 재배자금 10년거치 5년상환 지원

## [농정]

▲농업정보화=농산물을 취급하는 국내 주요 18개 인터넷 쇼핑몰을 21개로 확대하고 131농가의 홈페이지를 연계시킨다. 또 쇼핑은 물론 신용카드결제와 온라인 입금 등의 처리가 가능한 웹스토어 쇼핑체계를 구축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쇼핑몰 인터넷 주소를 www.a-peace.com으로 변경한다.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 대상인원을 지난해 3만명에서 올해에는 7만명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도 기초-중급-전문과정으로 세분화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정책자금 지원시 지원대상에 컴퓨터를 포함시켜 농민과 생산자조직에 대한 컴퓨터 보급을 확대한다.

▲세제지원=세제감면 시한이 2000년으로 끝나는 농민들의 예탁금 이자 비과세 기간이 2003년까지 연장된다. 따라서 농협과 수협에 대한 농어민들

의 예탁금 이자와 출자금에 비과세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도 비과세된다. 또 면세유 공급기간이 2003년까지로 연장돼 연간 1조9천억원 정도의 세금부담이 완화된다.

▲농어업인 부채경감=IMF 충격과 42조원 투융자사업의 원리금 상환기간이 겹쳐 가중된 농어가의 부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호금융 저리자금대체, 경영개선자금 추가지원 등의 경감대책이 추진된다.

## [임업]

▲임업통계 개선=99년 실시된 임업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가경제조사를 실시, 임가소득지원대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또 벌목업·송이채취업·유실수재배업·야생화재배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던 임업경영실태 조사를 산림조합에서 맡도록

해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인다.

▲임업기계지원센터 설치=임가의 영세성으로 고가의 장비 구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산림조합중앙회와 진안 임업기능훈련원에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설치, 산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주고 작업기술도 지원한다.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 개선=약초에 대한 재배자금 지원과는 별도로 장뇌 재배자금을 10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조경수 재배자금은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에서 3년거치 7년상환 조건으로 바꿔 재배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대상에 송이 외에 산머루와 자생난, 단기임산물 생산단지 작업로 시설까지 포함한다. 밤과 표고버섯과 같이 꺾임에 대해서도 건조 및 저장시설비를 지원한다. 산림조합 계통에 한했던

톱밥제조기 지원대상을 산림조합 계통조직과 독립자, 임업후계자 등으로 확대한다. 국산임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에 지원하던 임산물 구입자금은 목재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가공업체에까지 대상에 포함한다.

▲농안기금 운영개선=밤·표고버섯·대추 등 품목별 지원계획을 따로 운영하지 않고 통합해 운영, 품목별 생산량의 변동 등 현지여건과 수요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생활]

▲재래식 계량단위 사용금지=쇠고기 한 근, 논 한 마지기 등의 재래식 계량단위의 사용이 금지된다. 올 6월까지의 계도기간으로 재래식 계량단위를 사용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올 6월부터는 평이나 근·자·돈 등의 재래식 계량단위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재래식 계량단위를 쓰는 계량기를 만든 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평이나 근·돈 등의 계량단위 대신 m(길이), kg(무게), m<sup>2</sup>(넓이), °C(온도), l·m<sup>3</sup>(부피) 등의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해야 한다. 인치나 마일·피트·야드 등의 단위도 사용이 금지된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올 하반기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자동차를 정지했을 때와 긴급자동차 운전시, 그리고 재해신고 등 긴급전화 사용시는 운전중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또 핸드프리나 이어폰을 이용, 운전이 지장이 없을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교통법점 15점을 부과받는다.

##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대상자=원예특작, 축산분야에 종사중이거나 신규로 종사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영농규모, 연령, 영농종사기간과 관련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농기업경영자금, 축산전업경영자금 연계운용에 따른 지원대상의 경우 시설자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대상사업=특작의 경우 버섯·생약·차·잡곡·인삼 등

▲지원자금 종류=원예특작 및 축산분야는 시설 개보수자금과 운영자금을 종합지원하며 기타 분야는 개보수 운영자금만을 지원한다. 다만 2001년부터는 운영자금만 단독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조건과 자금용도 제한사항=금리는 연 5%다.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3~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다만 인삼식재 및 시설자금은 연금별로 3~5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원예특작의 시설자금은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며, 생산·재배시설, 저장·유통·가공시설 및 증축자금, 토지매입자금,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의 에너지 절감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장·유통·가공시설은 생산시설과 연계된 경우

에만 지원하며 토지매입자금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지원한다. 특히 토지매입자금은 지목상답(논)과 택지·도로 등 해당토지가 농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개발계획이 고시된 경우, 농림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다시 구입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보수자금은 기존시설에 개수·보완 및 기



합법인·농업회사법인·협동조합,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일반식품 가공업체, 명인지정업체 등이다. 또 운

균형되게 지원한다.

▲지원시설의 종류=시설비는 가공공장, 일반창고, 저온창고, 가타 부속건물, 오·폐수처리시설, 가공 기계류 등을 지원하되 부지구입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 일반창고와 저온창고 등 저장시설은 가공공장 본래기능에 부합하는 적정규모에 한해 지원하며 가공공장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은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규지원되는 시설비의 기준사업비는 농가공동조직의 경우 7억원 이내, 생산자단체 및 일반업체는 20억원 이내, 생산자단체 및 일반업체는 20억원 이내며, 운영비의 기준사업비는 포장디자인 개발비의 경우 한 업체당 최고 2천만원까지, 용기금형개발비는 한 업체당 최고 8천만원, 홍보물 유인비는 한 업체당 최고 1천만원 까지다.

▲대상자의 자격조건=가공공장에 대한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청 당일까지 해당부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사용권(지상권) 또는 10년 이상 장기임차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또 대구·경북 재경지정지역은 사업지역에서 제외되며 농업진흥지역의 논은 원칙적으로 사업지역에서 제외되 지역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도지사가 판단해 허용한다.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고 최저 1억원 이상 출자된 법인이어야 한다.

▲사업담당부서=농림부 식품산업과(02-504-9417~8), 시·도 농정국 또는 농림수산국, 시군·자치구 농정과, 유통과 또는 산업과.

# 농업 시설자금 2,000만원 이상 지원 원예·축산대상 ... 영농규모 제한없어

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연중신청이 가능하며 희망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취급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담당 부서=농림부 채소특작과(02-500-2683)

## <농촌가공산업 육성>

▲지원대상=시설비의 경우 5농가 이상 공동으로 출자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공동조직, 5농가 이상 출자하고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영농조

영비는 농림부가 지원한 농산물가공업체,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전통식품명인지정업체,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통해 면허를 받은 업체 등이 해당된다.

▲지원대상품목=전통식품으로 지정된 품목, 국내산 농산물로 원료조달이 용이하고 경쟁력이 있는 품목, 대규모 판매처 등 판로확보가 용이한 품목, 주세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품목에 대해 지원하되 동일지역내 동일품목과 유사품목은 원료의 수급현황과 판매전망 등을 감안해

지원하지 않는다. 운영비는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금형개발 등 포장개선사업과 홍보물유인비 등 홍보지원사업에 지원된다.

▲지원기준 및 조건=공통적으로 용자 70%, 자부담 30%를 기준으로 유자는 시설비의 경우 일반업체에는 연리 8%로 3년거치 7년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하며 나머지는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 운영비는 일반업체에 연리 8%, 2년거치 3년상환을 조건으로 나머지는 연리 5%, 2년거치 3년상환을